

물품공급계약서

롯데정밀화학(주)(이하"공급자"이라 함)와 거래회사명(이하"구매자"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공급자"와 "구매자"가 이 계약서에서 정한 제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이해와 협조로 본 계약물품을 보다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 판매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물품 및 가격)

- (1) 계약물품 : 계약물품은 「2025년 요소 공동구매사업」(이하 "공동구매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대표 구매 기업인 "공급자"가 구입한"요소"로 한다.
- (2) 계약수량 : "공급자"가 승낙한 물량
- (3) 공급가격 : "공급자"와 "구매자"가 상호 합의한 단가로 산정(VAT 별도)
단, 공급가격은 공동구매사업 참여기업 공고에 적시된 기준 가격 및 단가 산정 방법에 따른다.

제 3 조 (인도장소 및 일자)

- (1) 계약물품의 인도 장소는 "공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차한다.
지정 장소 : 울산시 남구 여천로 217번길 23, 롯데정밀화학 요소 창고
- (2) "공급자"는 계약물품의 인수 가능 시점 [3]일 전에 "구매자"에게 인수 일자 지정 및 부대비용(물류비 포함)을 확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계약 물품의 운송 선박

일정에 따라 인수 일자는 변경될 수 있다.

(3) "구매자"는 "공급자"로부터 통보받은 인수 일자를 검토한 후, 최종 인수 가능일을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4) "구매자"는 인도장소에서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계약물품을 인수하며, 계약물품에 대한 소유권 및 위험 부담 책임은 인도장소에서 "구매자"가 계약물품을 인수한 때 "공급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단, "구매자"가 인수일자를 초과하여 인수를 지연하고 있는 경우, 인수일자를 초과한 날부터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은 "구매자"에 이전된다.

(5) "구매자"는 계약물품의 운송 시 "공급자"가 지정한 운수회사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운송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6) "구매자"가 "계약물품"의 인수를 지체한 경우, "구매자"는 인수일자의 [7]일 이후의 날부터 실제 인수일까지 하루당 계약금액(공급가격 x 계약수량)에 10/1000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7) "구매자"의 인수 지연이 15일(인수일자로부터 계산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7]일 이내에 계약물품을 인수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구매자"가 계약물품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는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물품을 제3자에 매각하거나 "공급자"의 판단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8) 전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구매자"가 지급한 선수금은 "구매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서 "공급자"에게 귀속되며, "공급자"는 "구매자"가 지급한 잔금에서 계약 해제일까지 발생한 지체상금을 공제하여 반환한다.

제 4 조 (대금결제)

(1) "구매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금으로 톤당 U\$200을 "공급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물품 인수일자 [3]일 전까지 잔금(계약금을 제외한 물품 대금)과 실제 발생한 부대비용을 동일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2) 계약금과 잔금은 외화 송금(T/T) 방식으로 지급하며, 지급 통화는 USD로 한다. 단, 부대비용은 KRW로 정산한다.

(3) 송금 시 발생하는 은행 수수료는 각자 부담한다.

(4) 지급 계좌 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구매자"는 송금 완료 후 즉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송금 확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수취인명: LOTTE FINE CHEMICAL CO., LTD.

- 은행명: KEB HANA BANK

- 계좌번호: 210-890007-06738 (063-JCD-10022-3)

- SWIFT 코드: KOEXKRSE

- 은행 주소: 534,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5) 외화 송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6) "구매자"가 본 계약에 따른 선수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일부만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며,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7) "구매자"가 본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일부만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5]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도 "구매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서면통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8) 전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구매자"가 지급한 선수금은 "구매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서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제 5 조 (수량 및 품질의 결정)

(1) 계약물품의 단위 수량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수입신고필증(수량 및 총포장 개수,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항목)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상차지에서 계근 절차를 진행하며, 계근 결과 수량이 기준 수량 대비 5%를 초과하여 오차가 발생할 경우, 해당 물품을 교환하여 상차한다.

(2) 계약물품의 품질은 계약물품의 최초 인도장소 입고시(공동구매사업에 따라 "공급자"가 대표구매기업으로서 요소를 수입하여 창고에 입고한 때를 말한다) "공급자"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지정한 검사기관이 시행한 품질검사 결과로 확정하며, "공급자"는 계약물품의 인도시 "구매자"에게 품질검사 결과를 제출한다.

(3) "구매자"는 계약물품의 수량 및 품질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수량 및 품질과 일치함을 인지하고, 계약물품을 인도장소에서 '있는 그대로(AS IS)'인수한다.

(4) "구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량 및 품질이 확정된 계약물품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든 제품의 하자, 결함, 수량 부족 또는 기타의 이유를 들어 인수를 거절하거나,

"공급자"에게 계약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 하자보수 등을 청구할 수 없다.

(5)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과정에서 계약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급자"의 "구매자"에 대한 품질검사 불합격 사실 통지로 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6) 본 계약이 전항에 따라 자동 해제된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을 반환하며, "공급자"는 선수금 반환 외에 "구매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 6 조 (손해배상)

각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 7 조 (불가항력)

"공급자"와 "구매자"는 천재지변, 전쟁 및 폭동, 내란, 파업, 법령의 개폐, 공권력에 의한 명령처분,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의 지체 혹은 인도의 불능이 발생한 경우에 "공급자"와 "구매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본 계약은 인도 불능이 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멸한다.

제 8 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구매자"는 "공급자"의 사전 서면승인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2) 전항에 의하여 "구매자"가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한 경우에도 "구매자"는 제3자와 연대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책임을 진다.

제 9 조 (비밀준수의무)

"구매자"는 본 계약으로 인해 취득한 "공급자"의 영업 정보, 구매 정보 등을 계약의 존속중이거나, 계약의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 10 조 (상계처리)

"구매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 기타 손해배상금 등의 채무가 있을 경우, "공급자"는 자기가 "구매자"에게 지급할 채무에서 우선 상계할 수 있다.

제 11 조 (계약의 효력 및 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5년 00월 00일부터 2025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제 12 조 (법령준수 및 진술보장)

(1)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국내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하는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법정최저임금준수 등 국내법으로 규정하는 노동권을 보장하고 준수해야한다.

(2) 당사자들은 본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임직원, 대리인 등이 i) 형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미국 해외부패방지법(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 뇌물방지법(U.K. Bribery Act) 등 적용 가능한 모든 국내외 반부패 법령(이하 "반부패 법령")을 준수할 것이며, ii) 이 계약과 관련한 행위,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제3자에게 재산적, 경제적 이익을 제공, 약속하는 행위를 한 적 없고 하지 않을 것을 진술 및 보장한다.

제 13조 (조문해석)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제 14 조 (재판관할)

본 계약에 관한 분쟁,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5 조 (특기사항)

본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대리권 등 어떠한 권한도 부여한 바 없으며 "구매자"는 이를 확인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양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9월 XX일

"공급자"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217번길 19
롯데정밀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승원

"구매자"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00길 00
주식회사 000
대표이사